의 안 번 호

1836

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】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21. 11. 11.(목)

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1. 11.(목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7.(화)

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O 대화강 국가정원 전동차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경감 규정을 정비하여 대화강 국가정원 전동차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O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태화강변을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명칭 변경
- 전동차 탑승을 철회하는 경우 등 이용료 반환 규정 신설(안 제5조)
- O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

#### 다. 근거법규

○「지방자치법」제9조 및 제22조

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경희)

○ 본 조례안은 대화강 국가정원의 명칭변경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전동차 이용자의 권익을 위하여 탑승을 철회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
그 밖에 한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였음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검토한 바 시행에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여지 며 조례개정 타당하다고 사료됨

# 4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## [수정안]

- 수정이유 : 「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료 경감 대상자 추가
- O 조문대비표

제6조(이용료의 경감) 생략 1.~12. (생 략) 1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3. 「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 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 시하는 사람  1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	개 정	안	수 정 안
	제6조(이용료의 경감) 1.~12. (생 략) 13. 그 밖에 구청장이	생략	제6조(이용료의 경감) 생략  1.~12. (개정안과 같음)  13. 「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 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 1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

# 근 거 법 규

# 「지방자치법」

- **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   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의 조정
    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    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    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: 감독
    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 · 후생복지 및 교육
    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   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    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    - 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    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    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  -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   - 가,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   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   - 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    - 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   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· 운영
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- 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  - 가. 소류지(小溜池)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  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  - 라.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
  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
  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  - 사. 공유림 관리
 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  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  - 차. 지역산업의 육성 · 지원
  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  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  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  - 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- 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  - 가. 지역개발사업
  - 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  - 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  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·개수(改修) 및 유지

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- 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- 사. 자연보호활동
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- 자. 상수도 ·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- 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·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·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파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거,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-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  - 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· 유영·지도
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 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  - 라. 지방문화 · 예술의 진흥
  - 마. 지방문화 · 예술단체의 육성
-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  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  - 나. 지역의 화재예방 · 경계 · 진압 · 조사 및 구조 · 구급
- 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